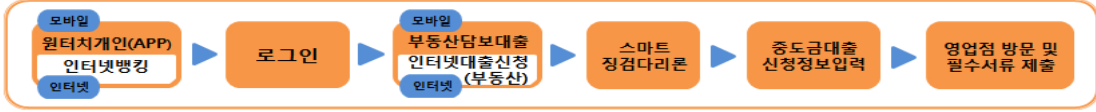


# 우리은행 중도금대출

## 인천검단신도시 한신더휴 아파트



### 스마트징검다리론 신청방법



### 대출대상

- 분양가의 10% 이상 계약금을 납입한 일반분양계약자

### 대출한도

- 분양가의 60% 이내. 단, 정부 정책에 따라 차주 별 대출가능 한도 상이  
중도금1~6회차 : 회차 선택 및 금액조정가능, 1인당 1호수로 제한

###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- 만기일시상환방식

### 대출금리 및 이자납부방법

- 대출금리(年이율) : 신규취급액기준COFIX(6개월) + 1.5% (예정)  
2019. 05.02 현재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(6개월) 기준금리: 년 1.94%
- 이자납부방법 : 이자후불제  
대출기간 동안 시행사가 대납 후 입주시 정산,  
입주시정개시일부터 이자 납부의무는 고객(차주)에게 있음

### 채권보전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보증서 80% 담보, 시행사/시공사 연대보증

### 부대비용
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年0.13%

사회배려계층인 경우 보증료의 40~60% 할인(보증료를 할인 안내서 참조)

- 인지대 : 총 대출 금액 별 상이

ex)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: 고객부담 35,000원  
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시 : 고객부담 75,000원

스마트징검다리론을 이용하시면 패키지 상품(신용카드, 급여이체, 예·적금, 환전·송금) 활용으로 대출기간 중에 "담 포인트"를 적립해드리며, 향후 입주시 당행의 [집단대출 - 분양아파트 입주자금대출] 을 이용하시면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이 가능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. (자세한 내용은 [담]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
※ '17.1.1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(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(입주자금대출)에 대해 '여성(주택담보대출)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, 잔금대출(입주자금대출)취급 시 ①소득증빙자료 제출 ②비 거주식 분할상환(거차기간 1년 이내) 적용 ③변동금리 선택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DTI(※)평가 ④DSR(※)산출 및 활용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셀프 상담코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(\*)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DTI[대출금리 인상 아님] (\*\*)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

#### ※ 유의사항

-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등록 또는 보증 부적격자, 우리은행 내규에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(상환)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,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정책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, 고객의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자격, 대출한도,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고객께서는 은행상담자로부터 COFIX금리 등 기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대한 특징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후 신중하게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 필수준비서류 (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)

- 분양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
- 분양대금의 10% 이상 납입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입금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통
- **주민등록초본 1통(세대주 포함, 모든 세대원 제출)**

#### ※ 세대의 정의

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- 소득증빙서류(2개년치) : 

재직증명서+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사업자등록증+소득금액증명원
연금수급권자확인서+거래내역증빙자료

※ 증빙가능한 소득이 없는 경우, 다음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
- ① 사실증명원 : 국제청사실증명원상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
-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(때업자)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- ③ 사업자등록증 :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개시를 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

### 중도상환해약금

- 면제(단, 준공 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상환 시 0.8% 부과)

### 기타사항

- **공동명의일 경우 : 차주 및 공동명의인의 영업점 방문 필수(신분증 지참)**

### 대출 상담 및 취급 영업점

**포스코금융센터 (103동, 104동, 105동)**

☎ 02-3453-6611 차장이영섭(220) 계장이우영(211)

**풍무동지점 (101동, 102동)**

☎ 031-997-8333 차장양승식(400) 대리김태호(313)



# 주책도시보증공사 보증서 (일반분양계약사용) 보증료율 할인 안내



## 보증료율 할인 :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

(1) 사회배려계층 :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,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

<p>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(40% 할인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</li> <li>2.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</li> <li>3.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가구</li> <li>4.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,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.</li> <li>5.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이고,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이내 결혼 예정 자 포함)인 경우</li> <li>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 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가구</li> <li>8.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 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권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권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권, 5.18 민주유공자(유족)확인권, 특수임무공자(유족)확인권,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확인원 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</li> <li>9.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</li> </ol>
<p>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(60% 할인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. 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</li> <li>10.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 의 고령자</li> </ol>

(2) 모범납세자 :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정장표장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를 할인

(3) 전자계약 :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%를 할인

➡ (1),(2),(3)의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적용



적용대상	확인서류
저소득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 확인서류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</li> <li>- 건강보험증(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)</li> <li>* 기혼인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나,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</li> </ul>
다자녀 가구	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 가구	- 주민등록등본, 장애인 증명서
고령자가구/노인부양가구	-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</li> <li>-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</li> </ul>
한부모가족	- 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족	- 외국인등록증 사본(필수)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출입관리소))
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독립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</li> <li>-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</li> <li>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</li> <li>- 5.18민주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</li> <li>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</li> <li>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</li> <li>-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</li> </ul>
의사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</li> <li>-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</li> </ul>
모범납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</li> <li>*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</li> </ul>

